

평가지표 19-2.

연명의료결정 제도 안내

수급자의 생애말기 자기선택권을 존중하기 위해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해 보호자에게 안내드립니다.

안내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명의료결정제도 목적

: 연명의료를 받지 않을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정립함으로써 환자가 존엄하게 삶을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 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이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합니다.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신청기관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위해서는 반드시 가까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방문기관에서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이 아닐 가능성이 있으니 반드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현황을 확인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기관마다 상담실 운영 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방문하시려는 기관에 미리 확인 후 방문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등록기관찾기 : <https://lst.go.kr/addt.composableorgan.do>

(참고)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https://lst.go.kr>)

위에 대해 양지 요양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이에 서명합니다.

수급자명 :

보호자명: